● 제300회 ●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
#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(의안번호 : 2323)

2021. 4. 28.

보건복지위원회수석전문위원

# [이영실 의원 대표발의]

의안번호 2323

# I. 조례안 개요

#### 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이영실 의원 발의(외 10명)

나. 제출일자 : 2021년 04월 02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04월 06일

# Ⅱ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# 1. 제안이유

-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에 따라 보건의 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. 특히 최근들어 코로나19 장기화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들이 현장에 서 겪는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의료인력 소진·이탈 현상 등이 나 타나기도 하였음.
- 보건의료서비스는 보건의료생산 요소 중에서 인적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노동집약적인 분야임.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 할 수있음.

○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수준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 의 질을 높이고,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.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보건의료인력 수립계획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4조)
- 다. 보건의료인력지원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함.(안 제5조)
- 라.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6 조 및 제7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

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Ⅲ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#### 1 제정안의 취지

본 제정안은 상위법인 「보건복지인력지원법」에서 시장의 사무로 규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 보건의료인력 계획을 수립하고,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발의되었음.

#### 2 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#### 가.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의 입법배경과 주요 내용

-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의 급증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보건의료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낮은 처우수준으로 인해 보건의료인력의 적정한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음.
- 이에 국회에서는 2019년 4월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과 우수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(이하 "법")을 제정하였음.
- 법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,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,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, 보건의료인력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등을 규정한 총 20조로 구성되어 있음.

#### 나. 제정안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

#### (1) 제정안의 필요성

- 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・시행 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(법 제3조),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 교육 등에 대한 지원 (법 제 10조),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(법 제 14조)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제정안은 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중심으로 시 차원의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체계를 조례로 명시해 보건의료인력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임.

#### (2) 총칙 (안 제1조~제3조)

- 제정안 제1조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 립・시행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시민의 건강 증 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음.
-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법
  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범위와 같음.

#### 〈표〉 보건의료인력의 범위

관련 법률	유 형
의료법	▪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간호사, 조산사, 간호조무사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	■ 임상병리사, 물리치료사, 방사선사, 작업치료사, 치기공사, 치위생사, 안경사, 보건의료정보관리사

관련 법률	유 형		
약사법	■ 약사, 한약사		
응급의료법	■ 응급구조사		
기타	■ 영양사(국민영양관리법) 등		

자료: 보건복지부

 제정안 제3조는 법 제3조제2항¹)에 따라 서울시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.

#### (3)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수립 (안 제4조)

- 제정안 제4조는 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이 시행계획을 지역보 건의료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.
-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은 법 제6조2에 의해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음.
   그러나 이 경우 의회에의 보고절차가 부재한 상황으로 제정안 제4조제2항은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건 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여 「지역보건법」제7조제4항3)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지역보건법」과

<sup>1)</sup> 법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 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<sup>2)</sup> 법 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<u>시·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</u>라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
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sup>3) 「</sup>지역보건법」제7조제4항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·군·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·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·도(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**시·도의회에 보고하고**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.

- 「지역보건법」제7조제1항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 다음 각호 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.
  - 1.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
  - 2.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·단기 공급대책
  - 3. 인력·조직·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
  - 4.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
  - 5.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

#### (4) 보건의료인력지원정책 심의위원회 (안 제5조)

- 제정안 제5조는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의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음.
  - 심의위원회는 제정안 제4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의 심의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이 참여하는 위원 회로 보건의료인력과 공무원, 민간단체, 서울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4)

<sup>4)</sup> 제정안 제5조제4항 위원은 담당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, 5급 이하 공무원을 당연직 간사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<sup>1.</sup> 노동자단체,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
<sup>2.</sup> 서울시에 지부나 지회를 설치한 의사회·치과의사회·한의사회·약사회·조산사회·간호사회 및 간호조무사회에서 추천 하는 사람

<sup>3.</sup>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<sup>4.</sup>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이 추천하는 사람

<sup>5.</sup>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시의원

<sup>6.</sup> 그 밖에 보건의료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

- 제정안 제5조제6항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「서울특별시 시민건 강관리 기본 조례」제9조에 따른 시민건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하였음. 그러나 시민건강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을 보았을 때 해당 사항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※ 시민건강위원회5)는 「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조례」제10조제1항에서 30인 이 내로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위촉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음. 위촉위원의 자격을 보면 제3호 건강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의 경우 대학병원으로 대표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제4호의 건강관련 시민단체, 지역보건의료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에 대한 규정은 제정안 제5조제4항제2호 등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음.
- ※ 현재 시민건강위원회의 위원 중 30인 구성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전문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분과위원회 구성을 통해 운영하는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정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※ 또한, 제정안 제5조제6항은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음.

<sup>5) 「</sup>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」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<u>30명 이내의 위원</u>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공동 위원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.

③ 위원 중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나머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다만,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위촉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.

<sup>1.</sup>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

<sup>2.</sup> 시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시민 중 위원회의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 된 자

<sup>3.</sup> 건강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

<sup>4.</sup> 건강 관련 시민단체, 지역보건의료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

<sup>5.</sup> 학교보건, 산업안전 보건관계자

<sup>6.</sup> 시민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민

<sup>7.</sup> 시 시민건강국장

④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거주지, 성(性), 연령, 직업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시민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. <u>다만,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</u>

#### 〈표〉제4기 시민건강위원회 구성명단

연	<b>¬</b> H	<b>5077</b>	ш¬
번	구분	주요경력	비고
1	당연직		공동위원장
2	시의원	•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	
3	시 위촉 전문가	• 00의대 00병원 교수대우	공동위원장
4	시 위촉 전문가	• 00구약사회 회장	
5	시 위촉 전문가	• 00병원 소화기내과 교수	
6	단체추천	• (사)한국정신분석협회 대표이사. 00 정신분석연구소 소장	
7	단체추천	•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감정 위원, 심폐소생술 국민운동 본부 사무총장	건강돌봄분과장
8	단체추천	• 대사증후군 관리지원단 팀장	
9	단체추천	• 00 공동생활가정 시설장	
10	시민공모	<ul> <li>前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장, 00구 요양기관 지정심사 위원회</li> </ul>	지역보건분과장
11	시민공모	• 0000병원 임상영양연구소 소장, 제1기 시민건강위원	
12	시민공모	• 공공급식위원회 위원 , 시민숙의 예산위원	공공의료분과장
13	시민공모	• ㈜헬스00 대표이사	
14	시민공모	• 정부혁신 국민포럼 등 각종위원회	
15	시민공모	• 00구 건강공동체 건강리더 활동. 00구 걷기클럽리더 활동	
16	시민공모	• 제3기 시민건강위원회 위원, 암환자 자조모임	
17	시민공모	• 나눔건강 생활협회 대표	
18	시민공모	•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	
19	시민공모	• 식생활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	
20	시민공모	• 장애인용품 제작회사 00 대표	
21	시민공모	•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, 마을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	
22	시민공모	• 시민 안전교육협회 이사 및 교육강사, 00구 자원봉사센터	연임
23	시민공모	•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, 서울시 의정모니터단	
24	시민공모	• 서울시 복지거버넌스 위원	
25	시민공모	• 제3기 서울시민건강 위원, 어르신 건강메니저 및 자원 활동가	연임
26	시민공모	• 00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, 환자권리옴부즈만 위원	
27	시민공모	• 0000 어린이집 원장, 생명존중교육협의회 회원	
28	시민공모	• 00구 주민건강 리더	
29	시민공모	• 00구 신체활동 리더	연임
30	당연직	• 서울시 시민건강국장	

#### (5)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(안 제6조)

-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지원,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음.
- 서울시에서는 보건의료인력(보건소장 및 보건소 신속대응반 50명) 대상으로 재난의료 현장관리중심 교육훈련프로그램(FMTP)

를 운영해 보건의료종사자의 재난의료지원에 대한 교육 등을 실 시하며 보건의료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한 바 있 음.

- 2021년도의 경우 「서울시 및 자치구 역학조사요원 역량강화 교육」을 8개월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음.
- 그 외에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「2021년 지자체 감염병대응 실무자교육(FETP-F) 및 역량강화 사업」, 「2021년 만성질환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」등의 역량강화 사업에 국·시비매칭의 형태로 참여인원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임.

〈표〉 2021년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 주요 사업 운영현황

사업명	교육주관	대상	예산
재난의료 FMTP	서울시	보건소장 및 보건소 신속대응반 50명	80,000천원 (시비 100%)
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	질병관리청	-시·도 및 보건소 내 지역사회건 강조사, 심뇌혈관질환 관리 등 업무담당자 -고혈압·당뇨병등록교육센터 전문 인력	29,400천원 (국비 매칭)
지자체 감염병대응 실 무자교육 (FETP-F) 및 역량강화 사업	질병관리청	-시·도 및 보건소, 보건환경연구 원 감염병 담당 실무자 (6-9급)	질병관리청에 서 교육비 직 접 지급(서울 시 예산 없음)
서울시 및 자치구 역학 조사요원 역량강화교육	서울시	-역학조사관 121명, 역학조사요 원 200명	175,000천원 (시비100%)

- 또한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시민건강국 외에도 인력개발과 및 개별 시립병원 교육팀 등을 통해 파편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.
- 이에 제정안을 통해 서울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 전반에 대해 국가사업과 조합하여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지원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서울시 보건의료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종 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.

#### (6)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(안 제7조)

- 2016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조합원 설문조사에 따르면,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이직을 시도하거나 고려한 사유로 '열악한 근무환경·노동강도'를 1순위로 꼽은 것으로 나타남.6)
- 제정안 제7조에는 시장이 보건의료인력의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이를 통해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겪는 열악한 근무환경 및과도한 노동강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<sup>6)</sup> 이종선, 고형면, 정헌주, 김호진 (2016), 전국 보건의료 노동자 노동실태 분석. 노동연구, 33, 169-197.

#### 3 종합의견

- 2015년 메르스 사태,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등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은 국민건강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중요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음. 그러나 보건의료인력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소진과이로 인한 이・전직 등에 따른 인력관리상의 문제도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음.
- 보건의료산업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분야인 만큼 전문 지식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임. 그러나 보건의료산업의 지속적 인 의료인력 부족과 높은 이직률, 장시간 노동 등에 따른 높은 노동강도 등은 문제로 지적되어 왔고,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음.7)
-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「보건의료인력 지원 법」을 제정한 바 있으며, 동 제정안은 「보건의료인력 지원 법」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책무를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규정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임.

문 의 처 도미화 입법조사관 (02-2180-8147)

<sup>7)</sup> 한국노동연구원 (2017).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의 고용효과.